

■ 법률 논단 ■

[조세] 2015년 M&A 개정 세법<sup>1</sup>



(법무법인 지평 **임승혁** 공인회계사)

M&A 관련 세제는 2010년 7월 1일 대폭 개정되어 합병 분할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다양한 유형의 거래에 대한 특례가 일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세법의 운용과정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되어 2012년 1월 1일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에서만 과세(또는 과세 이연)하고 분할신설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은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승계하여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M&A 세제의 큰 틀에 대한 개정은 없었고 세부적인 정비를 위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시행되는 개정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제외 기한 연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할증하여 평가됩니다. 즉 주주 1인이 그 특수관계인과 함께 어느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 보유 지분율의 수준과 회사의 규모에 따라 보유한 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10~30%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손법인, 청산 확정 법인 등은 이러한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분율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50% 이하	20%	10%
50% 초과	30%	15%

<sup>1</sup> 본 원고는 월간조세 2015년 4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위와 같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개정에서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뿐만 아니라 위 조세특례제한법 할증평가 적용 제외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득세법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 상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할증평가 적용 제외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뿐만 아니라, 법인과 개인이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의 세법 적용에 있어서도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부동산과다법인 보유 주식 판정기준 보완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율	
일반 주식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기타자산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 주식		누진세율(6~38%)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누진세율(6~38%) + 10%
		기타	누진세율(6~38%)

\*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별도

종전 규정에 따르면 위 표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이란 다음 요건을 갖춘 주식을 말합니다.

구 분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주식 발행 법인의 업종	모든 업종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업
주식 발행 법인의 부동산 비율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 (자산총액) ≥ 50%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 (자산총액) ≥ 80%
주주의 양도 주식규모	3년 통산 50% 이상 양도	요건 없음

금번 개정에서는 위 표에서 부동산 비율의 판단에 있어, 분자에 해당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소유한 특정법인 또는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가액에 그 특정법인 또는 부동산과다법인의 부동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부동산 비율의 분자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다음의 자산 가액을 합산합니다.

- ①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 ② 소유한 특정법인 주식 가액 x 소유한 특정법인의 부동산 비율
- ③ 소유한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가액 x 소유한 부동산과다법인의 부동산 비율

이러한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 3.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일정한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 중 지분율(의결권 있는 주식만 고려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종전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로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의 주주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4. 적격합병·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손익 과세 이연 등 특례가 적용되는 적격합병의 요건으로는 사업목적 요건, 지분의 연속성 요건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있습니다.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하나로서 피합병법인의 핵심 지배주주(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5항의 주주)는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합니다. 한편,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보유하여야 사후관리 규정(예컨대 과세 이연된 양도손익을 합병법인에서 과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 ① 해당 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 ② 해당 주주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 ③ 해당 주주가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 ④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 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 ⑤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⑥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014년 9월 26일 개정에서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주식 처분 사유에 다음의 경영정상화계획(이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 처분이 추가되었습니다.**

- ⑦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이 부실징후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 약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한편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분할법인의 핵심 지배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로 받은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보유하여야 사후관리 규정(예컨대 과세 이연된 양도손익의 과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식보유 요건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주식 처분은 적격합병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개정된 내용이 적격분할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1일 이후 주식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5.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이연

내국법인(이하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교환한 경우,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교환으로 양수한 주식을 처분(상속·증여 포함)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소유 주식 전부를 양도할 것
- ② 교환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즉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과 교환할 것
-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주식을 양수할 것
  - i)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
  - ii)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

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 양도 양도차익의 과세 이연 특례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가 적용 시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6. 적격현물출자 과세 이연 유지

법인이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시가에서 출자한 순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액만큼의 양도손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현물출자에서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얻은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 이연된 양도차익은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 또는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 토지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이연된 양도차익이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과세 이연이 유지됩니다.

종전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만 부득이 한 사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에서는 부득이 한 사유에 피출자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최초로 출자법

인에 적격합병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 ①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의 단독 출자에 따라 설립된 완전자회사일 것
- ②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였고, 출자받은 자산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③ 현물출자 이후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 ④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것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3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7.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 추가과세 보완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0%, 20% 또는 22%,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조직변경 및 교환(법인세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세율(10%)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번 개정에서는 **추가 세율(10%)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적격합병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